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16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2. 3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나주시 C대 407㎡ 중 별지(1) 도면 표시 7, 8, 9, 10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19㎡ 지상 판넬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34㎡ 지상 본적조 스테이트 지붕 단층 주택,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10㎡ 지상 블록조 스테이트 지붕 단층 물치장을 각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20. 12. 17.부터 위 가.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(2)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하종민

별지